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2년 12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일부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의결사항을 법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의 문구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문구 수정
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의결사항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를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로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2조)
다. “행정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합
라. “입방미터”를 “세제곱미터”로 문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국가표준기본법』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2. 11. 7 ~ 11. 26) : 의견제출자 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제3호 중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000만원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12조제1항 전단 중 “예산편성”을 “예산의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편성하기”를 “의결하기”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18조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1조 중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중 “행정·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잡종재산 대부의 준용)”을 “(일반재산 대부의 준용)”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24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본문 중 “입방미터당”을 각각 “세제곱미터당”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및 제5항 중 “잡종재산”을 각각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41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행정재산----------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4. 일반재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1.·2. 3(생 략)	1.·2. 3(현행과 같음)
4.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행정·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4.---------- 행정재산----------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예산의결 ----------. ---------- 의결하기 ----------.

현 행	개 정 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제3장 행정재산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 및 처분) ---------- 행정재산----------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
②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행정재산----------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 행정재산----------.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행정재산----------.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 행정재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③---------- 행정재산----------.

현 행	개 정 안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⑤---------- ---------- ---------- - 행정재산----------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생 략)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현행과 같음)
제4장 잡종재산	제4장 일반재산
제24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 ---------- ---------- ---------- ---------- ---.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석.토석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 ---------- ---------- ---------- --세제곱미터당 ---------- -------.

현 행	개 정 안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세제곱미터당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일반재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일반재산----------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일반재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 일반재산---------- ---------- ---------- ----------.
⑤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재산---------- ---------- ----------.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1조(신탁의 종류) ---------- ------ 일반재산---------- ---------- ---------- ----------.